

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5. 7. 22.(수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허원제 부위원장
김재홍 상임위원
이기주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결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보고)에 의거, 의결사항 “가”는 제2009-30차(‘09.7.9)에서, 의결사항 “나”, “다”, “라”는 제2011-67차(‘11.11.30)에서, “마”는 2010-1차(‘10.1.14)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서면회의 대상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(2015-39(서)-181)

- 방송법 제15조 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요청한 (주)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7개 SO에 대한 시설변경허가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(주)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(2015-39(서)-182)

- 피신청인(엘지유플러스(주))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철회하고, 신청인에게 248,37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다. 에스케이텔레콤(주)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(2015-39(서)-183)

-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(주)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재정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라. (주)케이티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(2015-39(서)-184)

- 피신청인(케이티(주))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요금 387,8710원을 철회하고, 조건 없이 홈허브폰 계약 해지 및 스마트홈폰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(15개월) 동안의 스마트홈폰 무료사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마.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명을 위한 일괄개정에 관한 건

-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등 규칙 13건(2015-39(서)-185)

-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 및 「행정규제 기본법」(법률 제13329호)에 따라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등 위원회 소관 행정규칙 총 13건(고시 12건, 규칙 1건)의 일몰기한(규제의 재검토기한)을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